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 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입니다.

제3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은행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의 계약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 이내 연, 월, 일로 한다.
(이하 "디폴트옵션 정기예금"이라 한다.)

제5조(이자지급방법) 이 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제6조(이자)

- ①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재예치일(자동 만기연장일)을 이율 결정일로 합니다. 다만, 응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응당일에 이은 첫 영업일을 응당일로 하고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응당일로 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예치기간에 따라 이율 결정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하여 원금에 가산합니다.

제7조(재예치(만기 자동연장))

- ①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가입한 예금은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거래처가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금액으로 하여 당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가 가능합니다.
- ②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확정기여형(DC)제도 및 IRP(기업형, 개인형)제도에서 가입한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재예치됩니다.)
- ④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 되며, 약정이자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
- ⑤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8조(거래방식) 이 예금은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스템에 의해 신규, 지급, 해지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며 통장은 사용하지 않고 단말거래나 인터넷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제9조(중도해지)

- ① 중도해지시는 신규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경우 2025년 4월 1일 이전 가입 건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 개정된 중도해지이율을 소급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10조에 의합니다.

제10조(특별중도해지)

- ①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의 퇴직, 연금지급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4)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특약

- (5)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
 -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3)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4) 수탁자의 사임
 - (5) 가입자의 사망
4.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일정량의 수수료 지급 사유
 - (1)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 (2)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5. 당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이전 사유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 ② 위 ①항에 의한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재예치 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단, 제4호 제6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1. 계약기간이 3개월, 6개월, 12개월인 계약 : 계약기간별 약정이율
 2. 계약기간이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인 경우
 - (1) 예치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 : 12개월 계약기간 이율
 - (2) 예치기간이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24개월 계약기간 이율
 - (3) 예치기간이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36개월 계약기간 이율

제11조(중도인출(분할해지))

-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허용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분할 해지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② 중도인출 시에는 신규일(재예치일)로부터 재예치일까지의 이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의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 ③ 최초 재예치 전 중도인출일까지의 이율은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
- ④ 재예치 후 만기 전 중도인출일까지는 최종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⑤ 예금 신규 당일에는 중도인출(분할해지)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기타)

-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등은 불가하나,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② 상기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부 칙

이 특약은 2005. 12. 29.부터 시행합니다.

이 특약은 2007. 6. 18.부터 시행합니다.

이 특약은 2008. 8. 11.부터 시행합니다.

이 특약은 2010. 8. 2.부터 시행합니다.

이 특약은 2013. 2. 25.부터 시행합니다.(기 가입하신 고객은 기존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특약은 2015. 7. 1.부터 시행합니다.(기 가입하신 고객은 기존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특약은 2022. 12. 2.부터 시행합니다.(기 가입하신 고객도 적용됩니다)

이 특약은 2023. 11. 6.부터 시행합니다.(기 가입하신 고객은 기존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특약은 2025. 4. 1.부터 시행합니다.(기 가입하신 고객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